

신유형 상품권 및 은행 예금·여신 분야 표준약관 개정

- 상품권 발행사의 자금 운용 현황을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 고객에게 유리한 은행 약관은 변경 즉시 적용하고, 대출 연체 부담은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하였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 신유형상품권 및 은행 3종 표준약관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신유형 상품권		①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무 및 고지의무 반영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사항
		② 잔액 환급 요건 확대 (불리한 사용처 축소 또는 이용조건 변경)	
		③ 잔액 환급 요건 구체화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 결함)	
은행 3 종	예금	㉔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즉시 통지, 즉시 적용	
	기업용 여신 · 가계용 여신	㉔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즉시 통지, 즉시 적용	
		① 약관 변경 시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여 통지	
		② 약관 변경 시 사전 게시·통지 기간을 ‘1개월’로 통일	
		③ 고정금리 변동 허용 근거 삭제	
		④ 상환 연체 시 과도한 이자 부담 제한 (5천만 원 미만)	개인 채무자 보호법 제정사항
		⑤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기간 연장 (3천만 원 미만)	
		⑥ 고객의 對 은행 채무조정 신청권 명시 (3천만 원 미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관련】

이번에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발행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제8호, 제9조 제2항)

* 선불충전금은 신유형 상품권 구매 고객이 발행업자에게 발행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양도·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임(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1항)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르면 선불업자(상품권의 경우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별도관리 해야 하며, 선불충전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상기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25조의3 /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또한,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을 확대하였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에서 제외된다. (표준약관 제7조 제3항 제2호, 동조 제4항 제2호)

또한, ▲종전의 환급요건이었던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시켜, 이 부분 조항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표준약관 제7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제1호)

* ‘환급요건’ 부분은 전자거래금융법 개정사항(동법 제19조 제2항 제1·2·4호)을 반영한 것임

【은행 3종 표준약관 개정 관련】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제1·2항).

종전에는 은행이 이미 체결된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개월의 사전 게시·통지 기간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은 그 즉시 적용되도록 하여 고객의 권익 및 은행 운영상의 효율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대출거래의 표준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가계용)」도 ▲상기 예금거래기본약관과 동일하게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기업용 제23조 제1·2항/ 가계용 제21조 제1·2항)

* '즉시 적용'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공정위가 수용하여 개정된 것임

개정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이 밖에도 ▲은행이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할 때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지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객이 변경 전·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기업용 제23조 제2항/ 가계용 제21조 제2항), ▲사전 게시·통지 기간이 같은 조 내에서 '30일', '1개월'로 달라 혼동을 일으키던 것을 개선하여 '1개월'로 통일하였다(기업용 제23조 제1·2항/ 가계용 제21조 제1·2항).

또한, ▲고정금리 변동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계약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기업용·가계용 개정 전 제3조)

* '23년 청주상당신협이 연 2.50% 고정금리 대출 이용 차주에게 금리를 연 4.5%로 인상 하겠다고 통보해 논란 발생 → 고객이 대출 계약 시 통상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 금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금리인상기에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고객의 기대권을 보호할 필요

한편, 금번 개정에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개인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 채무자보호법')이 제정·시행(10.17.)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대출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였다. 즉, 채무 일부에 대한 상환 연체로 전체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만일 그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이 없었더라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기업용 가계용 제3조 제5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2항, 제7조 제1항)

* 대출원금은 약정금액 기준이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

〈참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 예시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 총 10회에 걸쳐 순차로 10씩 상환해야 하는 대출채무의 경우

(현 행)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개 정)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만일 개인채무자가 100만 원의 대출원금을 10회에 걸쳐 매회 10만 원씩 나누어 상환해야 할 경우, 채무자가 최초로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만 원을 연체하였다면 이때 실제 연체된 10만 원 외에도 아직 상환기일이 미도래한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를 즉시 상환해야 함.

그런데 ●**종전**에는 실제 연체된 10만 원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 90만 원을 합한 **100만 원** 전부에 대해 **약정이자** 외에도 **연체가산이자**가 **함께** 부과되었다면, ●**개정**된 기본약관은 실제 연체된 **10만 원**에 대해서만 **약정이자** 외에 **연체가산이자**가 **함께** 부과되고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이 부과되도록 변경된 것임.

※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① ‘가계용’이 적용되는 **가계대출**과, ② ‘기업용’이 적용되는 **기업용 대출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함

둘째,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①이자 등 지급을 14일 이상 계속 지체한 때, 또는 ②분할상환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될 예정임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위 기간 내에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때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업용 제7조 제6·7항, 제19조 제2항/ 가계용 제7조 제5·6·7항, 제18조 제2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2항)

이는 종전 규정이 기업용은 3영업일, 가계용은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한 것에 비해 통지 기간을 늘림으로써 3천만 원 미만 소액 채무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출원금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여전히 종전의 짧은 통지 기간인 3영업일·7영업일이 각 적용된다. 기간 내 통지 미도달 시 실제 통지일로부터 해당 기간이 지난 때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업용 제7조 제3항/ 가계용 제7조 제2항)

셋째,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고객이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은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이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을 약관에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채무자인 고객이 자신에게 그러한 채무조정신청권이 있음을 더 잘 알고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업용·가계용 제9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1조)

*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의 채무조정을 제도화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가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예방'보다,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처방'이었다는 지적에 대응한 결과임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 등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 발행업자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상품권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합리화된 계약조건과 강화된 알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대출 연체이자 부과가 제한되고 채무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채무자는 재기할 가능성을, 은행은 채권의 회수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9월 30일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 <붙임> 1.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2. 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3. 개정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신·구조문대비표
 4. 개정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강수 (044-200-4445)
		담당자	사무관	원준희 (044-200-445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종 전	개정 후
제4조 (발행 등) ①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문자메시지 발송, 카드의 발급 비용 등)을 부담한다. ※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신 설〉 8.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 (환불) ①·② (생 략) 〈신 설〉	제4조 (발행 등) ① ----- ----- -----. (현행과 같음) 8.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u>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 및 그 보호조치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 (환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유효기간 경과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등(제2호의 경우에는 발행자)은 해당 신유형 상품권의 잔액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1. <u>상품권 금액 범위 내에서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u> 2. <u>발행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신유형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축소</u>

③ 유효기간 경과 전, 특정 물품 등의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경우, 신유형 상품권 상의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등은 해당 신유형 상품권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⑤ (생략)

제9조 (지급보증 등) (생략)

<신 설>

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④ -----
 --- 상품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등(제2호의 경우에는 발행자)은 -----
 -----.

1. 상품권 상의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2. 발행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신유형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⑤·⑥ (현행 제4·5항과 같음)

제9조 (지급보증 등)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발행자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 전	개정 후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 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거치 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 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 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 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 ----- ----- ----- “약관등” ----- ----- 약관등의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 관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 또는 관 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명령) 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
<신 설>	2. 약관등의 개정이 거래처에 유리한 경우
<신 설>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거래처에 그 대로 적용되는 경우
<신 설>	4. 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 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 래처에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개(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의	② ----- 약관등을 ----- ----- 약관 등의 ----- ----- ----- -----

방법으로 알려되,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u>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u> 1. ~ 6. (생략) ③ ~ ⑤ (생략)	-----. --- <u>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종 전	개정 후
제1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본문 생략)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문 현행과 같음) -----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 ② (생 략)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 ⑤ (생 략) <신 설>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④ (현행 제4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은행은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
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
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⑥ (생략)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제6조(담보) ① (생략)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 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 제4항

⑧ 제6항

제6조(담보)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후략)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 ③
(생략) ① ~ ⑤ (생략)

④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 3. (생략)

4.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⑤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신 설>

----- 제14조 -----
(후략)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④ (각 호 외의 부분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제20조 -----

⑤ (각 호 외의 부분 현행과 같음)

1. ----- 제16조 -----

⑥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3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개인금융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신 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 · 이자 · 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 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6항에 해당되어 ... (후략)

<신 설>

<신 설>

⑦ 은행이 제6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8항----- ...
(후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제7조 제6항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은행은 제7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채무조정 요청)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 ③ (생략)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 (후략)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 (후략)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3조

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8항-----.

제11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① -----
----- 제10조-----
----- ... (후략)

제13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

제11조-----

-----, 제12조-----
-----.

② ----- 제11조-----
-----, ... (후략)

③ 제11조, 제12조-----

----- 제14조

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총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 (후략)

제14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 (후략)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 (후략)

제15조 ~ 제17조 (생략)

제18조(통지의 효력)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 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_____.

제14조 (은행의 변제 등의 총당지정)

① -----
----- 제11조 -----

... (후략)

제15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 제12조-----
-----, ... (후략)

② -----

----- 제14조-----
-- ... (후략)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9조(통지의 효력)

[illegible]

	<u>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u>
제19조 ~ 제21조 (생략)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u>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단서 신설></u>	제23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 -- 약관이나 부속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등”이라 한다)을 ----- ----- 변경되는 약관등의 시행일 직전 1개월간 그 내용을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1. <u>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명령)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u> 2. <u>약관등의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u> 3. <u>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u> 4. <u>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② 은행은 약관등을 변경하는 경우

<u>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 ③ ~ ⑤ (생략) 제23조 (생략)	<u>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된 약관등의 시행일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그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전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	---

종 전	개정 후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 ② (생 략)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삭 제>
④ ~ ⑤ (생 략)	③ ~ ④ (현행 제4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은행은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⑥ (생 략)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생 략)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생 략)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 제4항 -----

-----.

⑧ 제6항-----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③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 3. (생략)
 4. 제5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생략)

<신설>

----- 사실(제3조제5항에 의한 경우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

1. ~ 2.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 3. (생략)

4. ----- 제19조-----

④ (현행과 같음)

⑤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일

<신 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후략)

<신 설>

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⑥ 은행이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7항-----
(후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은

<신 설>

제9조 ~ 제11조 (생략)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후략)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

행은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
다.

제9조 (채무조정 요청)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3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

----- 제

11조 -----

제12조 -----

② ----- 제11조

----- (후략)

③ 제11조, 제12조-----

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후략)

제13조(일부변제 · 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후략)

② ~ ③ (생략)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후략)

제14조 ~ 제16조 (생략)

제17조(통지의 효력)

① (생략)

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
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
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
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도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
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14조
-----, (후략)

제14조(일부변제 · 일부상계와 총당)

① ----- 제11조 -----
-----, (후략)

④ ----- 제12조-----
-----, (후략)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6조-----

.

보며,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
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
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

제18조 ~ 제19조 (생략)

제20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 제20조 (현행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21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등의 시행일 직전 1개월간 그 내용을 회사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1. 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명령)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
2. 약관등의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은행은 약관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된 약관등의 시행일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그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합)을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전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 (생략)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